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26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이병도 의원 외 20명
- 나. 제안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병도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기는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업, 취업, 생활 등에 따른 많은 부담감과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그동안 청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청년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이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제2호자목 신설).
-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입법예고(2019. 4. 8. ~ 2019. 4. 15.)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방치되어 왔던 청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제2호),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부여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제2항).
-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은 2015년 11월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되었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2019년 4월에 수립 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개요>

	설자리(7개사업)	일자리(6개사업)	살자리(6개사업)	놀자리(6개사업)
세 부 추 진 과 제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활력공간 운영 지원 강화
	● 희망두배 청년 통장	●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 사회주택 공급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실행 기반 강화
	●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범위 확대	●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기회 확대	● 청년 매입임대 주택 공급	● 청년기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서울청년민회의 및 청년커뮤니티 운영지원
	● 청년인생설계학교	● 0턴1트 청년권리보호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시 청년포털 구축
	● 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	●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 신용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인재풀 구축
	●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가. 청년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 항목 추가(안 제6조제2항제2호 자목 신설)

- 개정안(안 제6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은 5년 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에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li> <li>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li> <li>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li> <li>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li> <li>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li> <li>마. 청년의 부채 경감</li> <li>바. 청년의 생활안정</li> <li>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li> <li>아. 청년의 권리보호</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li> <li>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li> <li>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li> </ol>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li> <li>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li> <li>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li> <li>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li> <li>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li> <li>마. 청년의 부채 경감</li> <li>바. 청년의 생활안정</li> <li>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li> <li>아. 청년의 권리보호</li> <li><u>자. 청년의 건강증진</u></li> </ul> </li> </ol> <p><u>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li> <li>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li> <li>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li> </ol>

-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7개 분야(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 자목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청년 건강에 대한 적신호 위협<sup>1)</sup> 등 청년 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건강증진”을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7개 시도의 청년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5년 마다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으로 유사하며, 특히,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청년의 건강권 보장 내지는 건강 검진’ 등의 사항을 포함 하고 있음.
- ※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건강 검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청년 생활 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위태로운 청년 건강은 비단 서울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국가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 되었고,<sup>2)</sup> 17개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sup>3)</sup>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1) 취업난, 생존경쟁 속에 청년건강 ‘빨간 불’ 매일경제(2018.02.13.), 겁밥으로 한 끼 때우는 고달픈 청년들, 청년이 아프다 오마이뉴스(2017.12.15.)

- 서울시에서 청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액 시비가 아닌 국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자목)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동 규정이 없어도 관련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2030대 청년들, 알고가자" 새롭게 바뀐 건강검진, 2030대 청년들 무료로 건강검진 가능... 검진 항목부터 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공감신문(2019.4.02.)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 청년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했으나, 2019년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의 이번 국가건강검진 혜택 확대로 인해 약 720만 명의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청년층 정신·신체건강 사회서비스 청년이 제공한다. 중앙일보(2018.12.16.)

나. 청년 건강증진 방안 강구 등(안 제18조 신설)

- 안 제18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 안 제18조제2항은 시장에게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청년 기본 계획 중 청년 건강 증진 계획이 수립될 경우 당연히 시장에게 부여되는 책무이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청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하여야 한다.</u>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u>구축할 수 있다.</u>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6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병도, 박순규, 김재형, 추승우,  
채유미, 송아량, 송재혁, 오현정,  
정진술, 문장길, 이광성, 이영실,  
권영희, 김 경, 권순선, 김화숙,  
김호평, 이동현, 한기영, 유 용,  
김용연 의원 (21명)

## 1. 제안이유

- 청년기는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업, 취업, 생활 등에 따른 많은 부담감과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그동안 청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청년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 이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안 제6조 제2항제2호자목 신설)
- 나.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청년의 건강증진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